

한국에너지공단 감사결과

1. 조사 배경

- 국회 의원실은 '22년 9월 실시된 '한전의 에너지공대에 대한 컨설팅'의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부에 감사 요청*

*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시 이철규의원은 컨설팅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23.4.18) 등

< 비위 제보 내용 >

- ① (이사장,감사의 미보고,은폐 의혹) 에너지공단 컨설팅('22.9.13~30) 이후, 이사장·감사는 정관에 따라 부정,비위 사실 확인시 이사회 및 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하나 미보고
- ② (징계,환수 등의 사후조치 미흡) 컨설팅 결과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징계,환수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 미흡
- ③ (공대 감사체계 미비) 감사조직이 없는 수준이며, 감사 선임규정 및 대행규정 등 감사 체계 구성을 위한 규정 미비 등 문제

2. 조사 결과 (23.4.24~5.12 실지감사)

◇ (총 평) 한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이사회·산업부 미보고*는 사실로 확인 되었으며, 후속 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없이 단순 개선·권고에 그침

* A 前 감사는 규정상 보고의무 명백히 위반, 이사장·총장은 보고 관련 주의 소홀

- 특히, 이번 우리부 감사를 통해 예산·회계, 총무·인사, 공사·계약, 연구 등 기관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비위사항을 확인하였는 바,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포함한 징계·환수 등 엄중 조치* 필요

* 해임건의(총장),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개선4건, 통보5, 환수(5천900만원) 등 총 98건

① 이사장·감사 등의 미보고 : 감사는 규정 위반 이사장·총장은 주의 소홀

-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 위반) 감사는 「정관」 19조에 따라 부정 불비 사항 발견시 이사회·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
- 이사장·총장은 대학 경영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주의 의무 소홀

* 은폐의혹 관련하여 미보고 지시, 보고 방해 등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② 한전 컨설팅 과정 및 후속조치 평가 : 컨설팅 한계로 부정·비위사항 미조치

- (한전 컨설팅 후속조치 미흡) 한전은 컨설팅의 한계로 비위사항에 대해 '확인서·소명서'를 미징구하고, 환수 징계 요구 없이 개선·권고에 그침
- ⇒ 개선·권고는 상당 부분 이행중이나, 징계·환수 등 추가조치 필요

③ 분야별 감사결과 : 조사 결과 확인된 규정 위반 및 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개선 4건, 통보 5건, 환수(5천9백만원) 조치 필요

○ (예산·회계 분야)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 징계, 환수 등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26,345,610원) : 휴일사용 158건(66,663,128원), 심야사용 57건(43,705,252원), 개인카드사용 27건(5,239,110원), 분할결제 19건(10,505,120원), 유가증권 구입 3건(233,000원)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533,687원) : 정산부적정 22건(7,523,187원), 분할결제 1건(390,000원), 출장증빙 미흡 5건(620,500원)
-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 용도가 서로 다른 '22년 정부(191억원) 및 지자체(200억원) 출연금 391억원을 용도(사업비)외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208억원 집행

○ (인사·총무 분야) 보수 인상 절차 부적정,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등 ⇒ 징계, 환수 등

- 직원 보수 인상 절차 부적정 : 산업부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자체 인상 ('22.1.17)
- 직원 성과평가 세부 기준 마련 지연 : 21.12월 직원보수규정 제정 이후 조속히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15개월 지연
- 교원 채용 외부 심사위원 선정 부적정 : 공대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교수 12명이 근무 발령 이전에 38건의 교원 채용심사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 훼손
-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 허위근무, 시간미준수 등 규정위반 206건 17,285,752원 부적정 지급 사례 확인

○ (공사 및 계약 분야) 방수공사, 부동산 수수료 부당지급 등 ⇒ 징계, 환수 등

- 임차 기숙사 방수공사 비용 부당 지급 :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주체이나 보수공사를 학교부담으로 진행하여 약 1천만원의 손해 발생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지급 : 임차사택 총 12건 중개수수료 과다지급 (3,204천원)
- 계약 선금 지급 부적정 : 채권확보조치 없이 회계연도 마지막 날 지급

○ (연구 분야) 연구비 목적외 사용, 연구비 관리 부적정 ⇒ 환수, 기관주의 등

- 연구비 목적외 사용 : 교수 14명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범용성 비품기기 (이어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총 31건 (20,090,770원) 구입
- 연구비 관리 부적정 : 「정착연구비 관리 지침」이 상위 규정(연구업무 관리규정, 학칙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상위규정만을 적용

④ 공대 감사체계 미비 관련

- 설립 초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시급한 현안 위주로 인력을 운영하여 감사조직이 없었으나, 감사규정을 제정('22.12.29.)하고 감사조직 정비중

3. 조치 계획

□ 분야별 위반 사항 처분 : 신분상 · 재정상(환수) 조치 등

- [신분상 조치]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기관경고·주의8건, 개인경고·주의75명)
 - * 징계조치 : ①직원 보수 인상 절차 부적정(총무인사팀장), ②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위반 10회이상, 총100만원이상 3명), ③음식점에서 법인카드 총 14회 880만원 분할결제 (1명) ④임차 기숙사 방수공사 비용 약 1천만원 부당 지급(기획처장)
- [재정상 조치] 시간 외 근무 부당 수령 등 부적정 집행 5천 9백만원 환수
 - * 환수대상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업무추진비 정산 부적정,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 부동산 수수료 과다 지급,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 [기 타] 제도개선(4건) 및 통보(5건) 조치

□ 임원에 대한 처분 : 해임건의 · 통보

- [C 총장]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 관리자로서, 이사회 미보고 및 분야별 비위사항(징계 6명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크고,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정산 부적정 등 관련 규정 위반도 다수 확인됨
 - 비위 사항에 대해 종합 고려 시, 징계 수준에 해당하는 처분이 필요함에 따라, 「정관」 제23조에 따라 총장 선임기관인 이사회에 '해임 건의' 조치
- [A 前 감사] 비위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나, 임원은 「공대법」 및 「정관」 등에 따른 이사회 해임 의결 외에 별도의 징계가 없고, 감사가 이미 퇴임('23.04.14.)한 상황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자료 통보' 조치
 - * 「에너지공대 정관」 제19조(감사) 제4항에 따른 감사의 명백한 보고 의무 위반
- [B 前 이사장] 이사장의 이사회 미보고는 주의 소홀로 중징계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도의적 책임)의 경중과 사직서 제출 고려, 별도 처분 없음

별첨	처분 조치 세부 내역 (종합)
-----------	-------------------------

건 명	처분내용(인원/건수/금액)				
	징계	주의·경고	개선	기타	환수(원)
1. 이사장 감사의 미보고·은폐		기관경고1		2건(통보)	
2. 예산회계분야		(37)			
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 휴일 및 심야 부적정 사용		경고13명 주의8명			2,138,700
○ 개인카드 부적정 사용		경고2명 주의3명			22,500
○ 법인카드 분할결제	1명	경고1명 주의3명			10,505,120
○ 유가증권 구입 사용		경고1명			63,000
○ 법인카드 장기 미정산		기관주의1		1건(통보)	
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및 정산		기관경고1			3,221,380
○ 원거리 집행 증빙 미흡		주의2명			
○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기관경고1		1건(교육)	2,406,000
다.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기관주의1			
3. 인사·총무 분야		(32)			
가. 직원 성과평가 세부기준마련 지연		경고1명 주의1명			
나. 직원 보수인상 절차 부적정	1명	기관경고1 경고1명			
다. 외부 심사위원 선정 부적정		기관주의1	1건		
라.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3명	경고11명 주의16명	1건		17,285,752
4. 공사 및 계약분야		(4)			
가. 선금 지급 부적정		경고1명 주의2명	1건		
나. 임차기숙사 방수공사 비용부담 부적정	1명			1건(시정)	
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지급		기관주의1			3,204,000
라. 입학식 비용 과다 지급					
5. 연구비 집행 분야		(9)			
가. 연구비 목적외 사용		경고3명 주의4명			20,090,770
나. 연구비 관리 부적정					
○ 회의비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주의1명	1건		
○ 정착연구비 지원 부적정		기관주의1			
6. 공대 감사체계 미비					
합 계	6	83*	4	5	58,937,222

* 주의·경고(83건) : 기관경고4건, 기관주의5건, 개인경고34명, 개인주의40명